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운전 미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1항제6호, 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5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6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6 신설).

- 생활물류서비스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35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택배서비스사업자·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3호의3·제3호의4, 제44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시기 명시를 위한 위임규정 마련 필요

안 제19조의5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하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하 “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안 제9의5는 제1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사업자등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¹⁾

그런데, 안 제19조의5는 사업자등이 종사자등의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언제 확인하여야 하는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의무”는 그 자체의 위반 시기 판단뿐만 아니라 확인 이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의무”의 기준 시기가 되는 점, 양 의무위반행위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라는 점 등에서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해당 확인의무의 이행은 안 제19조의5제3항에서 규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시기·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로, 현행 제19조의4는 사업자등에게 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면서,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1) 안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안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의5. 제1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²⁾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의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점의 경우 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의무이행 시기를 정하고 있음.³⁾

따라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시기·절차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격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소화물사업자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수 정 의 건>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 ⑤ (생 략)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험등의 가입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u>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 ----- <u>보험등의 종류·가입 대상과 확인의 시기·절차,</u> ----- ----- <u>등에 관하여</u> -----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